

농 어 촌 정 비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1. 7.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농업기반과)

1. 개정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816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외 사용허가시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및 절차 추가(안 제14조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 관계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목적외 사용허가 처리 기간을 60일로 연장(현행 30일)

○ 별지 제17호서식 하단의 사용허가 절차에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과정 추가

나.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안 제57조의2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111호서식)

*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정비계획 반영

○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세대주의 인감증명서와 주택소유자의 세입자확인용 인감증명서 삭제

3. 관련 예상쟁점

가. 관계부처 입장 : 해당없음

나. 관련 단체 등 입장 : 해당없음

다. 쟁점 대응방안 :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추진일정

1) 제·개정안 확정 : '21 7월

2) 관계부처협의 : '21년 7월

3) 입법예고 : '21년 7~8월

4) 규제심사 : '21년 8월

5) 법제처 제출 : '21년 9월

6) 공포 : '21년 11월

나. 규제관련 검토사항 : 해당없음

다. 재정수반 여부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안, 별첨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법안담당

직 위	성 명	사무실 전화	HP	E-mail
식량정책관	박수진	044-201-1801	010-2318-1367	psjin73@korea.kr
농업기반과장	박재수	044-201-1851	010-2770-5589	jspark1@korea.kr
담당사무관	김영민	044-201-1852	010-3392-5646	ymk88@korea.kr
담당서기관	김태형	044-201-1855	010-3695-3732	kth11129@korea.kr
담당주무관	김형대	044-201-1854	010-8288-5046	kdh7924@korea.kr
담당주무관	김지향	044-201-1856	010-4614-5978	kjg5978@korea.kr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제1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사용허가신청서
[] 사용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현장조사 및 제출 서류미비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	------	--

신청자 (사용자)	법인 또는 기관(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이동전화번호	

사용 시설	시 설 명	위 치	사용면적(㎡) (사용수량, ton)

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			
사 용 기 간		사용개시 예정일	
사용료부과 예정액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경우에만 작성함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를(을) 신청합니
[]사용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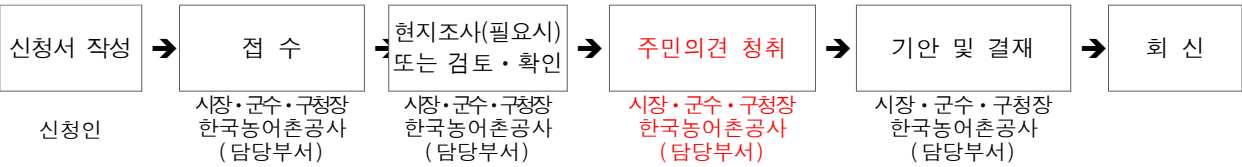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사용자 또는 신청 기관(단체)의 장(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그 밖의 사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등)

신청인 제출서류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세입자 및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달)의 전기요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기요금납부영수증, 전기요금납입증명서 등) 2.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사람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사본이나 관할 읍장·면장·동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등)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별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2.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자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① 영 제 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① ----- ----- ----- ----- ----- ----- -----.
1. 삭 제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주택소유자의 세입자확인용 인감증명서(세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제1호 및 제2호(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u> 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 ----- ----- ----- ----- ----- -----.
1. (생략)	-- <u>제1호</u> ----- ----- -----.
2. <u>세대주의 인감증명서</u>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